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네온간판(네온사인) 또는 크리스마스츄리등과 같이 일정한 패턴으로, ON/OFF를 반복(점멸)하는 대상품을 제어하기 위한 네온점멸기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상기 제품이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에 해당하여 인증이 필요한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A1 네온점멸기는 고정 전기설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스위치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며, 전자회로에 의한 ON/OFF기능을 가진 '전자식 스위치'에 해당되며, 적용 안전기준은 K60669-1 / K60669-2-1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는 네온점멸기로 조명을 ON/OFF하는 조명기기로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됩니다.

Q2 멀티탭에 사용하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안전인증대상인지요? 바이메탈 구조이며 정격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경우 바이메탈이 휘어져 전류를 차단합니다.

A2 멀티탭 전용으로 사용되는 바이메탈식 과부하 보호장치(접점은 갖고 있으나 스위치로 사용되지는 않고, 보호장치가 동작되어 접점이 개방된 후에는 Reset하여 접점을 복귀시키는 원리로 동작되는 구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건설현장에서 냉·온수관 및 가스관 배관재의 관이음쇠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공구로서 외부에서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동작되는 건설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공구가 안전인증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3 건설현장에서 냉·온수관 및 가스관 배관재의 관이음쇠를 모터의 회 전력을 이용하여 발생한 압력으로 이음쇠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공구 (Press Tool/DC 12V, 충전기 외장형)는 직류제품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기는 동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제품이 교류(AC 220V)를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전동공구 중 기타 전동공구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됩니다.

Q4 무선자동차용 건전지와 충전팩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 충전용팩&자동차 부품 중(타이어)를 별도로 판매하려하는데 그 상품들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A4 무선조종자동차에 장착되어 판매되거나 별도로 부품으로 판매되는 건전지는 '일차전지 중 망간건전지 및 알칼리 망간건전지, 그리고 3차 전지 중 니켈-카드뮴전지, 일카라인 2차 전지, 니켈수소전지' 인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용 타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되나, 무선조종자동차용타이어인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자동차용 타이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5 타일 접착제는 아크릴 수지에 탄산칼슘, 물 등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이며, 일반 소비자보다는 건설현장 등 신축건물에 전문작업자에 의해 시공되는 제품인데 안전관리대상 품목인지 궁금합니다.

A5 욕실용 도자기류 타일 접착제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고 전문작업자만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접착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 제품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품공법」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의 표시사항은 무엇인지요?

A6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의 안전기준 7항에 의해 품명, 종류, 모델명,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경고(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용 작은 부품이 있는 제품에 한함)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